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804호

나. 발 의 자 : 김형재 의원(찬성자 25명)

다. 제출일자 : 2025년 5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2. 제안이유

-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홍보 소재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선정배제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안 제6조제3항).

나. 위원회 심의 시 홍보 소재 배제 사유 구체화(안 제12조제2항)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홍보매체 시민개방 홍보 소재 선정에 있어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분야를 확대하고,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대외적으로 비방하는 업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음.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생략)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연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③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u>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2.·3. (생략)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 ① (생략)	제12조(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심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및 단체가 응모한 소재는 배제하여야 한다.	② ----- ----- ---
1.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u>홍보</u> 하는 기업 및 단체	1. ----- <u>홍보하거나 비방하는</u>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2) 홍보매체 시민개방 사업 현황

- ‘홍보매체 시민개방’이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 및 단체 등의 홍보 소재를 서울시의 홍보매체에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사업의 일부로 2억 1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영세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도부터 추진되었으며, 비영리법인·단체,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응모자격을 가짐.
- 서울시는 공정한 소재 및 업체 선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조례에 명시된 심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함.

(3) 개정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

1) 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제6조제3항)

- 현행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①광고, 언론, 산업 디자인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③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홍보 소재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며, 실제로 광고·언론·디자인 계열의 전문가가 대부분의 위원 구성을 차지함.
- 그러나, 동 사업의 취지는 단순히 양질의 홍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지 않고 공익 활동 활성화와 영세소상공인의 경제 활동 촉진에

있는 만큼 소기업 및 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과 관련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목적과 수단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2) 홍보 소재 선정 배제사유 확대(제12조제2항제1호)

- 동 조례에 따르면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가 응모한 소재는 선정 대상에서 배제되나,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비방하는 경우는 선정 배제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지난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단체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음이 지적되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이에 동 개정안은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비방하는 기업 및 단체의 경우 소재 선정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업의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홍민지(2180-8118)
------	----------------	-------	----------------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안건 소관 상임위	규제철폐 안건
	김형재(1인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당없음
주요내용	<개정 필요성> ○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홍보 소재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선정 배제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 하려는 것임. <주요 입법 요지> ○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구성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영리 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다양화함(안 제6조제3항) ○ 홍보 소재 선정 배제 대상을 '특정 종교나 정당을 홍보하거나 <u>비방하는</u> 기업 및 단체'로 구체화함(안 제12조제2항)			
추진경과	○ '25. 05.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제330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시 소관 상임위 김형재 의원 지적사항 -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단체를 선정에서 배제 할 수 있도록 해야함.			
대응방안	○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기업 및 단체 선정 배제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상 임 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팀장	이주영(☎2133-6425)	담당 김민영(☎2133-6429)